



의안번호	제 2017 - 1 호
보 고 연 월 일	2017. 1. 4. (제7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07차 전체 회의	1
1. 일시 · 장소	1
2. 참석자	1
3. 주요 안건	1
II. 논의 결과	1
1.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논의 결과	1
2. 도주 · 범인은닉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3
3. 통화 · 유가증권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15
4.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28
III. 향후 일정	37

별첨 김현아, “기술유출사범 양형기준 수정”
 정준화, “도주 · 범인은닉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이 용, “도주 · 범인은닉 · 증거인멸 범죄군Ⅲ”
 안종열, “통화 · 유가증권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검토”
 이 용, “통화 · 유가증권 범죄군 검토Ⅲ”
 정준화, “대부업법위반 등 범죄군 양형기준안 검토”
 김현아, “대부업법위반 범죄군 검토Ⅲ”

I. 제107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12. 26.(월) 16:0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노수환, 박수정, 범 현, 안종열, 이 용, 이진국, 정준화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

3. 주요 안건

-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 도주·범인은닉, 통화·유가증권, 대부업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II. 논의 결과

1. 지식재산권범죄(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 수정 검토

가. 경과

(1) 제106차 전문위원 전체회의(2016. 11. 21)

- 형량범위 수정에 관한 의견대립
- 다수의견 ⇨ 가중영역의 상한만을 상향(6인)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5년↓or 7년↓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년↓ or 15년↓	10월 - 1년6월	1년- 3년	2년 - 5년 6년

- 법정형 상한만 가중되었고, 기존 양형에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상한까지 가중할 필요는 없음

○ 소수의견 ⇨ 기본영역의 상한도 상향(5인)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5년↓or 7년↓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년↓ or 15년↓	10월 - 1년6월	1년- 3년 4년	2년 - 5년 6년

- 법정형 상한 가중을 해당 범죄의 전체적인 가벌성 상승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별가중인자가 없는 사안에서도 반가치가 매우 큰 사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2) 제76차 양형위원회(2016. 12. 5.)

- 전문위원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의견, 전문위원 소수의견에 찬성하는 의견, 기본영역의 상한을 상향하되 상향 폭을 줄이자는 의견, 국내침해의 기본영역 상한만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됨
- 각 주장의 논거가 모두 경청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위원단에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

나. 전문위원 재검토 결과[제107차] ⇨ 『의견일치』

- 기존 전문위원 소수의견에서 국외침해의 기본영역 상한의 상향 조정 범위를 축소
- 국내침해 기본영역을 「8월-2년」, 국외침해 기본영역을 「1년-3년6월」로 각 상향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국내침해	- 10월	8월 - 1년6월 2년	1년 - 3년 4년
2	국외침해	10월 - 1년6월	1년 - 3년 3년6월	2년 - 5년 6년

2.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 이하 『의견일치』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도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주	- 6월	4월 - 8월	6월 - 1년
2	특수도주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3	도주원조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5년

2. 범인은닉·도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범인은닉·도피	- 6월	4월 - 1년	8월 - 2년

3. 증거인멸·증인은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증거인멸·증인은닉	- 10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2	모해 증거인멸·증인은닉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6월 - 4년

나. 「1. 도주」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 미한 경우(2유형)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2유형)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1) 특별감경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살인, 강도, 약취·유인, 절도, 공·사문서 범죄, 마약범죄, 식품·보건범죄 등 다수인이 가담할 수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특수도주죄나 도주원조죄의 경우 등 다수인 가담 형태를 상정할 수 있음
- 공·사문서 범죄, 마약범죄,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선택적으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체포자·간수자의 방임 등에 의하여 범행을 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공무집행방해, 폭행·협박 등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손괴나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도주죄의 경우, 특

별감경인자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치밀한 계획적, 주도적 범행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행위불법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1))

- 일반 도주원조죄(10년 이하)보다 법정형이 높은 형법 제148조의 간수자의 도주원조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구성요건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3) 일반감경인자

(가) 소극 가담

- 대부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1) 도주원조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2유형)

(4) 일반가중인자

(가)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2. 범인은닉·도피」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1) 특별감경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주 유형과 동일한 이유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성 있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형법 제151조 제2항)을 감안하여 본 범과의 인적 관계에 따른 부탁 또는 요청에 의한 범행일 경우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친구 등’과 같이 본범과의 관계를 기재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로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등 실무상 주요한 감경요소로 취급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죄, 불법게임장 관련 범죄에서 수사기관에서 범인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것이 범인은닉·도피죄 실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함
- 불법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의 범인은닉·도피죄에 비하여 조직적, 계획적이어서 비난가능성 또는 사회적 폐해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로서 이를 포섭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예: 불법게임장 등을 영업하면서 단속시 업주 행세를 할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여 범인을 은닉하기로 정한 경우 등)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경제적 대가의 수수

- 위증죄의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를 특별가중인자로, ‘경제적 대가의 약속’을 일반가중인자로 구분하고 있고, 횡령·배임죄의 경우에는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분류하고 있음
- 대부분의 판결들에서 범인은닉·도피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와 약속한 경우를 구분하여 양형이유에 기재하고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범인은닉·도피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그 이익의 정도 등이 고려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경우(특별가중)와 약속한 경우(일반가중)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 위증죄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을 양형인자로 반영한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타당함

(3) 일반감경인자

(가)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앞선 검토와 같음

(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범인 도피를 위하여 허위진술 등을 시도한 사안 중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쉽게 허위진술임이 발견된 경우 등 범행으로 인한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일반가증인자

- (가)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포함)

- 앞선 검토와 같음

(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라. 「3. 증거인멸·증인은닉」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일반 양 형 인 자	행위	○ 소극 가담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1) 특별감경인자

(가)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위증의 죄에서의 특별감경인자인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와 상응하는 인자로 규정

(나)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위증범죄에서는 ‘특히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인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만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증거인멸범죄는 위증범죄와 달리 친족간 특례 규정이 있는 점, 법률상 선서의무에 위반한 위증죄는 ‘특히 참작할 사정’을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경우’로 좁혀서 제한할 당위성이 있으나, 증거인멸죄는 그와 달리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가담’뿐만 아니라 ‘범행동기’에서 있어서도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

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본범과 사실혼, 연인, 친구 등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가)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사례에서 금전관계에 의한 동기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 있음

(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도주, 범인은닉·도피범죄군과 같이 양형인자 반영 필요성 있음
- 실제 사례에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한 예로 볼 수 있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을 가중 양형사유로 판결문에 설시한 예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위증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인 ‘위증이 신빙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상응하는 인자로 반영함

(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3) 일반감정인자

(가)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디지털 증거 등을 훼손하였다가 복원한 경우에는 결과불법을 차별화해서 평가할 수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가 복원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가) 경제적 대가의 약속

- '경제적 대가의 수수'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과 균형 고려

(나)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위증범죄군의 양형인자 참고

(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함)

마. 집행유예 기준

(1) 도주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구 분	부정적	긍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한 경우(2유형)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범인은닉·범인도피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증거인멸·증인은닉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수수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경제적 대가의 약속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통화·유가증권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 이하 『의견일치』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통화 위·변조 등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6년

2. 유가증권, 수표 위·변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유가증권 위·변조, 행사	- 1년	6월 - 2년	1년 - 3년
2	수표 위조변조	6월 - 1년	10월 - 2년	1년 - 4년

3. 부정수표 발행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부정수표 발행·작성/ 수표 부도	- 1년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허위 신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나. 「1. 통화 위·변조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

자			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1) 특별감경인자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범죄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 참고
- 문서범죄와 달리 달성하려는 목적이 경제적 측면으로 귀결되는 점을 참고하여 양형인자의 표현 및 정의를 규정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순한 호기심에 극히 적은 통화·유가증권을 위·변조한 경우
 - 위·변조 상태가 극히 조악하여 쉽게 위변조를 알 수 있는 경우
 -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가)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와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인 경우를 말한다.

(나) 다량의 통화를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문서 범죄 또는 대부분의 범죄군의 양형인자 참고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문서·유가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3) 일반감경인자

(가)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나)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4) 일반가중인자

(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통화 위·변조 등이 이득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고려함

(나)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하여 위·변조한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다)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 이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참고

(마)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문서·유가

증권 위조 등 범죄 포함)

다. 「2.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동종 누범(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장비를 사용한 경우
	행위자/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문서·통화 위조 등 범죄 포함)

- 대부분 통화 위·변조 유형과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공통되지 않는 인자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검토함

(1) 특별감경인자

(가)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분석 자료 총 108건 중 11건에서 '공탁', '피해회복 노력', '일부 피해변제', '보충권을 초과하여 위조한 사안에서 어음 상대방과 합의', '배서가 위조된 어음을 교부한 사안에서 배서인의 처벌불원'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와는 다소 범주가 다름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양형인자의 정의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일반감경인자

(가)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일반감경인자 참고
-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에 있어서는 발행일자, 지급기일, 발행인 등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조·변조가 가능함

라. 「3. 부정수표 발행 등」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행위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

양 형 인 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소극 가담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범행 후 도피

(1) 특별감경인자

(가)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문서/사문서범죄의 특별감경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견질용, 보증용, 기존채무 담보, 선수금 등으로 수표를 발행하였거나, 제3자가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수표부도)

- 거래처의 도산, 대금 미지급, 경기 침체, 업무상 배임 등 제3자의 귀책으로 인한 부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수익 급감, 매출 부진, 자금회전 악화, 경영악화, 투자 실패 등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수표부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1유형)

- 지적재산권, 방화, 권리행사방해, 손괴범죄 특별감경인자 참고
- 양형인자의 정의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소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2유형)

- 허위신고 유형에서 허위신고 후 수표가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을 수 있음

(라)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분석 자료 총 834건 중 268건에서 '회수', '공탁', '피해 변제', '수표소지인 처벌 불원', '회수 노력', '피해회복 노력', '회수 가능성' 등이 유리한 양형인자로 나타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관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 작성 및 허위신고)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

- 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2) 특별가중인자

(가) 악의적인 미지급(수표부도)

- 분석 자료에서 '단기간에 집중 발행 후 부도', '단기간에 거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발행 후 부도'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설시함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기준에도 '악의적인 미지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도를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집중 발행한 경우
 -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책임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폐업 또는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동종 또는 유사 업체를 운영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지식재산권, 공갈, 방화,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등 특별가중인자 참고
- 수표소지인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동일한 부도 금액에 따른 피해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결과 불법을 포함할 수 있는 양형인자로 설정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아래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수표 회수 등 피해 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수표소지인 등이 수표 부도를 직접적인 이유로 도산하였거나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한 경우

- 수표소지인 등의 자산 규모 또는 매출 규모, 피고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에 비추어 부도 금액을 다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3) 일반감정인자

(가)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부도)

- 지급의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어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분석사례들이 있음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양형기준인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도 적용 가능함

(나)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가)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이득죄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면 범죄수익의 취득여부를 중요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음

(나) 범행 후 도피

- 분석 자료에서 수표 부도의 경우 ‘도주’, ‘해외 도피한 경우’를 분리한 양형인자로 실시한 사례가 많음(22건)

(다)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마. 집행유예 기준

(1) 통화 위·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유가증권 등 위·변조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전문 위·변조법,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부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부정수표 발행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 작성 / 수표부도) ○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 범행 후 도피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 소극 가담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부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

4. 대부업법위반범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논의 결과 ⇨

이하 『의견일치』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1. 대부업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이자율 제한위반 등 / 중개수수료 수령 등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2	미등록 대부업 등	- 10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2. 채권추심법위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 6월	4월 - 10월	6월 - 2년
2	폭행, 협박 등 행위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3년 6월

나. 「1. 대부업법위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 형 인 자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일반 양 형	행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소극 가담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인 자	행위 자/ 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	--	---

(1) 특별감경인자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대부업범위범죄에서 단독범뿐만 아니라 공범 비율(44.7%)이 상당히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하여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의 차이가 큼
-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자의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다르므로, 범행가담 정도와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참고. 실제 사례에서도 영업성이 열은 경우 등 법률위반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영업인 경우
 - 제한이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

발

(2) 특별가중인자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인적 조직 내지 결합성은 영업성을 띠는 대부업범위반죄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요소임
- 조직적·전문적 영업형태와 단순 영업형태를 구분하고 가담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양형구간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 초과이자 수령, 중개수수료 수령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액'에 따라 불법성의 정도가 상당 정도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영업기간, 대부 횟수를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기간과 횟수가 미등록대부업자 등이 궁극적으로 수취하게 되는 이득액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라는 기준으로 이를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부금액, 대부중개금액, 수수료, 수입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이 매우 큰 경우
 -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거나 장기간에 걸쳐营业을 계속한 경우
 - 영업장의 수가 많거나 관여한 공범의 수가 매우 많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채권추심법위반죄 포함)

(3) 일반감경인자

(가)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대부업법위반죄는 대체로 범죄수익이 중요한 양형요소이고, 판결을 검토한 결과 구체적인 이득액의 다과가 가중적 또는 감경적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

(나)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가)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대부중개업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가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도박장소 개설 등,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유사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전파성이 높은 매체는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 등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파성이 큰 수단을 의미한다.

(나)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이득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취득 여부를 양형에서 고려함
- 공갈범죄 등 다수의 범죄군에서 양형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다)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등 다수의 범죄군에 반영된 인자임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장부를 폐기하는 등의 사례 있음

(라)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2. 채권추심법위반」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소극 가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

(가)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유형)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및 위계,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모두 ‘그 수단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채권추심법의 구성요건에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및 위계, 위력이 라는 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수단으로 하는 채권추심법 위반죄에서도 그 수단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정인자로 반영함

(나)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채권추심법위반죄에서 단독범뿐만 아니라 공범 비율(50%)이 상당히 높고, 앞서 대부업법위반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이 다양하여 그 가벌성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

(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손해의 전보 여부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함이 상당한 점, 추심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 등 유사 범죄군에서도 처벌불원을 특별감정인자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라)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2) 특별가중인자

(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의 경우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 크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양형인자로 이를 포섭하여 가중처벌 필요성이 있음
-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에서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유사 범죄군인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및 체포·감금 양형기준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대부업법위반죄 포함)

(3) 일반감경인자

(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채권추심법위반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동시에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바, 피해자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손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조직적 사기, 누범장물,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증권범죄) 등과 같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채권의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범행으로 취득한 법률상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외에 사실상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경미한 경우
 - 추심액을 종전 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거나 기타 추심행위로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여 적극 재산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나)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 (가)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대부업법위반 유형에서의 검토와 같음
- (나)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라. 집행유예 기준

- (1) 대부업법위반범죄
- (2) 채권추심법위반범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일반 참작 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폭행, 협박, 체포·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구 분	부정적	긍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I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8차 전체회의
 - 일시 : 2017. 3. 27.(월) 16:00
 - 안건 : 공청회 의견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